

# 무역장벽 119 Report

2026-03

- 01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동향
- 02 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 03 기업 상담 대응 사례
- 04 전문가 칼럼

美 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

전문가 칼럼 2026년 대미 통상 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실무적 과제

KOTRA 무역장벽 119 전담반

02-3460-7348



## 01

##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동향

## 미국 | 美 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

## 내용

美 연방 대법원,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결 (현지시각 2.20.)

- 판결 대상 : 상호관세, 펜나틸 관세(캐나다 35%, 멕시코 25%, 중국 10%)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님
- 美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기반 관세에 대해 법률상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6대 3)  
\*단, 판결문에 관세 환급 문제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음

## 근거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 전속 권한, 광범위 경제 조치에 대한 중대 질문 원칙 적용 필요, IEEPA 체계상 관세 권한 근거 부족 등

- 헌법상 조세권(power of the purse)은 의회의 고유 권한  
美 헌법 제1조 제8절에 의거, 조세·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 전속으로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 위임이 전제되어야 함.
-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적용 필요  
美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정치·경제적 중대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관세 조치의 경제·산업 파급력을 고려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모호한 법 문구만으로 행정부의 포괄적인 관세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움
- IEEPA 체계상 관세 부과 권한 근거 부족  
IEEPA 제1702(a)항 내 관세 tariffs·부과금 duties 명시 규정 부재, '규제(regulate)' 권한은 통상 과세 권한과 구별된다는 점을 근거로 관세 권한 도출 배제

## IEEPA 제1702(a)항

(a) 일반 원칙 : 이 편 제1701조에 정한 시기 및 한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자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훈령, 허가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A) 다음을 조사하거나 규제(regulate)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외환 거래
- 신용의 이전 또는 지급이 외국 또는 그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은행기관 간, 은행기관에 의한, 은행기관을 통한 또한 은행 기관에 대한 신용의 이전 또는 지급
- 통화 또는 증권의 수입 또는 수출

## 01

##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동향

## 미국 | 美 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

## 백악관 반응

-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  
'26.2.24일부터 150일간 10% 임시 수입 추가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  
현지시각 2.20.

- 트럼프 대통령은 본 조치 부과 기한 동안 대체 관세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출처 : 기자회견, SNS 등

→ 링크 바로가기

## 01

##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동향

## 유럽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추진

EU 집행위원회는 '25.12.17일 CBAM 적용 범위에 약 180개의 하류재 (CN코드 기준)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향후 이사회·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 '28.1월부터 시행 예정

우리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품목별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마련

→ 링크 바로가기

## 중국 | '26.12.1일부 新 '식품 리콜 관리방법' 시행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리콜 관리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6.12.1.일부터 시행기로 함.

- 식품 생산·경영자 및 시장 감독·관리부서의 책임 강화
- 식품 거래시장 담당자·식품 판매대 임대 책임자·전시회 개최자·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를 리콜 관리 대상에 포함.
- 식품 리콜 등급 기준 개선
- 불이행 시 처벌 강화 등 조정이 이뤄짐

식품안전 위험 정도 및 긴급성 기준으로 리콜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고 리콜 개시 시한을 기존 24·48·72시간에서 24·36·48시간으로 단축하여 위험 예방 통제 효과를 높이고 식품 리콜의 실효성을 강화함.

## 02

## 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지사화사업(4차)

마케팅 및 수출지원(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지원 등)

모집 기간 ~ 4. 10. (금)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비고 6개월(자비부담 150~360만원),  
1년(자비부담 250~600만원)

문의처 02-3460-7445

→ 신청 바로가기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부문  
19개 기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수출  
초기 중견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모집 기간 상시

지원 대상 중견기업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거나  
매출액 기준 수출 비중 10% 미만인 기업)

비고 별도 참여비용 없음

문의처 02-3275-0848

→ 신청 바로가기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아시아 시장 확보를 위한  
홍콩 진출 세미나홍콩 투자 진출 정보 및 진출 성공사례  
소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네트워킹 제공

모집 기간 ~2.27.(금)

지원 대상 홍콩 진출 고려 중인 한국기업

비고 참가비 무료,  
한-영 동시통역 및 점심 제공

문의처 02-3275-2103

→ 신청 바로가기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 보험료 지원사업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무역보험(보증)료 지원

모집 기간 상시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비고 접속경로: 공사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보험료지원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사업예산에 따라 지원불가할 수 있음)

문의처 02-399-5322

→ 신청 바로가기

## 02

## 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전년도 전세계대상 수출실적이 0달러 ~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 맞춤형 지원  
통해 수출기업 전환 및 수출 지속률 제고

모집 기간 ~3월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문의처 02-3460-3237

→ 신청 바로가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협·  
단체에 수입규제 및 산업 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모집 기간 3~4월 예정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문의처 02-6050-3683

→ 신청 바로가기



대한상공회의소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 사업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피해를 받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조사·상담 지원

모집 기간 4~5월 예정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비고 자비부담 없음

문의처 02-6050-3685

→ 신청 바로가기

## 03

## 기업 상담 대응 사례

## 과세가격 조정으로 관세 절감

**문의** 키오스크를 수출하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인보이스에 제품 가격과 수입 후 설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을 포함 단가를 기재함. 과세가격을 낮춰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격을 분리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

**답변** 미국의 경우 과세가격이 CIF가 아닌 FOB가격임. 물품 수입과 별개로 이뤄지는 수입 후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함.

## CHECKPOINT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물품을 배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 제품 원가(재료비, 인건비 등) + 마진 + 국내  
물류비(내륙 운송비, 창고료, 상하차비, THC 등)  
+ 부대비용(통관 수수료, 서류 발급비 등)

## CHECKPOINT 2

**CIF** Cost Insuran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물품이 목적지(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 FOB가격 + 국제 운송비 + 보험료

## 03

## 기업 상담 대응 사례

## 미국으로 수출 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과 비특혜 원산지 판정

**문의**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한-미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CBP로부터 원산지 판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원산지 판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 요청

**답변** 원산지 판정은 FTA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 기준과 덤핑 등 무역장벽을 위한 비특혜원산지 기준 2가지 모두 진행되어야 함. 한-미 FTA에 의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더라도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불충족되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CHECKPOINT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완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함. 품목별 세부 규정이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하여 품명, 용도, 재질, 공정단계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미국 CBP Advance Ruling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심층 컨설팅 바로가기

## 03

## 기업 상담 대응 사례

## 인도 BIS\* 인증 면제로 수출 거래선 확대

**문의** W사는 차량용 Hinge를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 인도에서 BIS Hinge 품질명령이 '23/24 발효된 후 '25년에는 중소기업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바이어로부터 인증 요청을 받음. W사는 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수출 중단 등이 우려되어 TBT 종합지원센터에 인증 관련 절차를 문의

**답변** TBT센터는 인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 비용 및 소요기간 등 안내. 인도 현지의 글로벌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Hinge가 인증 적용 대상인지 유권해석 의뢰하여 인증대상 품목이 아님을 확인하는 NoC(Non Objection Certificate:이의제기 없음)문서 발급 지원함.

## CHECKPOINT 1

## BIS 인증 절차 및 필요서류

- BIS 신청서 제출
- 제품 사양 및 설비 목록 제출
- 시험 성적서 및 품질관리 서류 준비
- 현지 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 위임장 제출
- BIS 승인 시험소에서 샘플 테스트 진행
- 필요 시 공장 심사 후 최종 서류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CHECKPOINT 2

##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 유효기간

1~2년. 이후 갱신심사 필요

## BIS 인증 없이 인도 내 유통 시

통관 불가, 제품 반입 제한, 벌금 및 행정 제재 발생

## 04

## 전문가 칼럼

## 2026년 대미 통상 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실무적 과제

한국원산지정보원 | 신통상 규제팀장, 권민경

## 2026년, 통상 불확실성의 고착화와 실질적 집행단계 진입

2025년 글로벌 통상 환경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도입과 그에 따른 변동성으로 점철된 '변곡점'이었다면, 2026년은 이러한 규제들이 제도화되고 실질적인 집행 단계로 접어드는 '정착'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어떠한 정책이 발표되는가"를 넘어, "강화된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되는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집행 동향은 매우 단호합니다. 2025년 8월 법무부(DOJ), 국토안보부(DHS),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합동하여 무역사기 TF를 발족하였고, 특히 지난 12월 법무부는 한 수입업체가 301조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텅스텐 카바이드 제품을 대만산으로 허위 신고하고 품목분류(HS Code)를 오분류한 혐의로 5,44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납부케 했다고 적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한 강력한 사법적 집행 사례로, 2026년 '원산지 우회 및 관세 회피' 단속이 사법적 영역까지 확대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원이 미국 CBP의 원산지 판정사례(Ruling)들을 분석한 결과, 2024년 410건이었던 원산지 판정 사례가 2025년에는 1,305건(잠정)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강화된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판정의 이해

## 특혜 원산지와 차이점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인 '특혜 원산지규정' 관리에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혜 원산지는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 "4단위 세번변경" 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비특혜 원산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되,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과 같은 구체적 판단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기준을 형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처럼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사안별 정성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04

## 전문가 칼럼

## 판정 사례로 보는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본원이 2025년 CBP의 원산지 판정 사례들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질적변형 여부는 개별 제품의 상세사항과 공정의 복잡성에 따라 CBP의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PCBA(인쇄회로기판 조립품)가 핵심요소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PCBA를 제조하고 베트남에서 케이스 조립만 한 경우, CBP는 "PCBA가 제품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원산지로 판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제품군에서는** 프레임 제조 공정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대만산 프레임에 중국에서 부품을 조립한 경우, CBP는 "일관되게 자전거 프레임은 자전거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화학적 반응을 통해 고유의 성질을 잃고 새로운 특성이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화학제품들처럼, 여러 화학물질을 혼합·가열하여 배합하는 공정이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러국가의 원료를 한국에서 배합·충진한 경우, 화학적 배합 공정이 새로운 특성을 창출했다고 판단되어 한국산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동일 공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

주목할 점은 같은 이름의 공정이라도 제품의 기술적 난이도와 산업적 가치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삭(grinding)' 공정은 정밀 부품 제조에서는 연삭의 정밀도가 제품 성능을 좌우하므로 핵심 공정으로 평가되지만, 일반 금속 부품 제조에서는 단순한 가공 공정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CBP는 공정의 기술적 난이도, 부가가치 창출 정도, 제품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사 품목의 다양한 판정 사례들을 참고하되, 자사의 구체적인 생산 방식과 공정 특성을 총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4

## 전문가 칼럼

## 우리 기업의 실무적 대응 전략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분석기반의 전략적 원산지 리스크 관리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유사 품목의 과거 판정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기업은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사의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 CHECKPOINT 1

제품의 핵심 기능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정을 명확히 정의하였는가?

## CHECKPOINT 2

해당 핵심 공정이 원산지 판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실제 생산이 이뤄짐을 증빙할 수 있는가?

## CHECKPOINT 3

우리 공정이 단순 조립 (Simple Assembly) 을 넘어선 기술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를 통해 원산지 인정 가능성과 잠재적 리스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판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CBP의 공식 견해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심사 결과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정의 조정이나 공급망 전략 변경 등의 대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둘째, 전 주기적 문서관리 체계 구축

원산지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은 '객관적 문서' 입증 자료입니다. Cyber Power Systems 사례\*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생산수량, 작업시점, 작업 지시서 등 문서 증거들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와같이 기업들은 생산사실과 제조과정을 소명하였다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체계적이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생산 공정의 각 단계를 문서화할 때는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① 서류의 작성·거래 일자리를 명확히 기재하고 ②구매·생산·출하 기록의 논리적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③제3자가 서류만으로 생산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완결성을 갖추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적 변형' 입증을 위해서는 해당 공정이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기술적·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생산 공정 설계 단계부터 문서화 전략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3년 미국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로 필리핀에서 생산된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인정한 사례. 기업의 입증서류(BOM, 작업지시서, 공정기록 등)에 작성날짜가 누락되거나 데이터 간 정합성이 부족할 경우 생산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원산지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정함

## 04

## 전문가 칼럼

이제 우리 수출 기업이 글로벌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상호관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경영의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수출선을 다변화하거나 수입선을 변경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시에도 원산지 판정의 가변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철저한 비특혜 원산지 관리로 통상 장벽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전략적 FTA 활용을 병행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입체적 원산지 대응 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